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6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에게 발급하는 건설기술경력증의 사용성 및 편의성 도모를 위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대상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추가, 위반행위 회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형태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안 제18조제3항 단서)

건설기술경력증의 사용성 및 편의제공을 위해 건설기술인의 요청 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안 제63조의2제1호)

건설기술인이 국외 경력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경력관리수탁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업무정지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1)

위반행위 회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적용 시 위반행위 처분일, 처분차수 등에 대한 적용 기준 미비로 혼선이 야기되어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